

LIG 넥스원(주) 보상위원회 규정

제정 2021년 5월 26일

개정 2024년 3월 25일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‘보상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(2024.03.25 개정)
- ③ 위원회는 제 6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다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, 그 순위는 위원으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,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4 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및 회의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6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7 조 (결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
2.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3. 위원장의 선임
4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8 조 (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 9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제 7 조에 따라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, 의견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1 조 (사무)

위원회의 사무는 이사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